

기본소득은 어떻게 노동자 소유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 경제민주주의를 향한 두 트랙 전략*

이건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

1. 서론: 경제민주주의 차원에서의 기본소득과 노동자 소유 기업

오늘날 자유, 평등, 시민권, 민주주의 등의 추상적인 가치들을 급진적이고도 해방적인 방향으로 확장하고자 고민하는 그 누구라도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와 만나게 되고 이와 고투하게 된다.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이 다음과 같이 자리매김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기본소득은 자유의 측면에서는 형식적 자유에서 실질적 자유로(Van Parijs, 1995; 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 가장 확장된 자유의 개념인 공화주의적 자

* 이 글은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2018년 8월 24~26일, 핀란드 탐페레대학교) 세션 B4에서 필자가 발표한 "How Can Basic Income Activate and Encourage Labor-Managed Firms?: A Two-Track Strategy for Economic Democracy"를 번역한 것이다.

유로(Raventós, 2007; Casassas, 2016; Casassas and De Wispelaere, 2016; Standing, 2017) 나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다. 평등의 면에서는 현재의 극심한 사회경제적, 젠더 차원의 불평등을 좀 더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다(Fraser, 1994; Zelleke, 2008, 2011; 이건민, 2017). 시민권과 민주주의의 차원에서는 인구학적 상황, 경제적 상황, 종사상의 지위와 계급 등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정당하고도 바람직한 사회배당이자, 공민권과 정치권,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사회경제적 권리와 경제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구성 요소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서 경제민주주의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한 방안으로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노동자 소유 기업(노동자 소유 협동조합을 포함하여)도 함께 떠오른다. 본고에서는 경제민주주의를 다음과 같은 사중의 능력으로 정식화한 카사사스(David Casassas, 2016: 1)의 정의를 따를 것이다. “(i) 일하기 위해 ‘진입’하기를 바라는 사회적 관계들을 정할 능력. (ii) 우리가 머무르고 일하기로 한 공간의 (비)물질적 성격을 결정할 능력. 그것은 실질적으로 들리는 ‘목소리(발언권)’를 갖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iii) 이 공간의 성격과 기능이 우리의 삶에서 바라는 바에 반하는 경우 이 공간에서의 ‘탈출’을 선택할 능력. (iv) 떠나기로 선택한 경우에, 그 다음의 기회들을 위한 이전 직장의 외부에서 제공되는 수단들에 의지할 수 있는 능력. 즉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건과 상태에서 (재)생산적 삶을 효과적으로 ‘다시 시작할’ 능력.” 이러한 경제민주주의의 추구라는 점에서 보자면, 기본소득과 노동자 소유 기업은 조금은 다른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본소득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생산과 노동, 작업장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서 광범한 의미에서의

경제민주주의의 만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노동자 소유 기업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생산과 노동, 작업장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즉 기업민주주의나 산업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경제민주주의 측면에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동자 소유 기업은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거의 연구되어 오지 않았다. 이는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문제시된다고 전망되자 일자리 보장과 참여소득이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무엇이 더 우월한지, 대체 관계에 있는지 보완 관계에 있는지 등이 활발히 연구되어 온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하지만 비록 지금까지 거의 논의되어 오지 않았긴 했지만 경제민주주의 혹은 산업민주주의 면에서 일자리 보장이거나 참여소득보다 훨씬 대담한 제안은 바로 노동자 소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기본소득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비판적, 해방적 사회과학과 사회정책을 추구하는 데 핵심적이다.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과 노동자 소유 기업의 발흥이 경제민주주의의 핵심을 이룬다는 관점 하에서, 기본소득이 노동자 소유 기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와 기제를 탐구할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노동자 소유 기업이 자본주의적 기업에 대해 지니는 비교우위와 비교열위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노동자 소유 기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와 기제를 탐구한다. 이 글의 마지막에서는, 경제민주주의를 향한 투 트랙 전략으로서 기본소득의 도입과 노동자 소유 기업의 활성화가 우리 시대의 주요한 해방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글을 맺는다.

2. 노동자 소유 기업의 비교우위와 비교열위 검토

Bowles and Gintis(1993: 92~94)는 노동자 소유 기업이 자본주의적 기업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는 네 가지 이유를 강조하였다. 첫째, 노동자 소유 기업에서 노동자들은 소유, 경영,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동기부여상의 이점들을 “참여 효과 participation effect”라 한다. 둘째, 잔여 청구권자로서 노동자 소유 기업의 노동자들은 기업의 총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기업의 총소득 증가는 노동자들의 잔여 청구권의 크기를 증가시키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직접적 잔여 청구 효과direct residual claimancy effect”를 낳는다. 셋째, 잔여 청구권자로서 노동자 소유 기업 소속 노동자들은 기업의 총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른 노동자들을 모니터링할 유인을 갖는데, 이는 자본주의적 기업에서보다 더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창출하는 “상호 모니터링 효과mutual monitoring effect”를 야기할지 모른다. 넷째, 자본주의적 기업이 임금에는 너무 적게 지출하고 그 대신 모니터링에 너무 많이 지출하는 반면, 노동자 소유 기업은 효과적인 상호 모니터링 구조 덕분에 자본주의적 기업에 비해 모니터링에는 적게 지출하는 대신 임금 인센티브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것을 “임금 인센티브 효과wage incentive effect”라 한다.

하지만 효율성 면에서의 이러한 강점들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소유 기업은 현실에서 수, 규모, 범위 따위에서 여전히 극히 제한적이다. 이는 자본주의적 기업에 비해 노동자 소유 기업의 약점들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약점들은 위에서 언급한 이점들을 상쇄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 Bowles and Gintis(1993: 95~96)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약들을 지적하였다. 첫째, 어떤 기업이 민주적으로 경영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만약 그 기업이 민주적인 운영 및 의사 결정 구조를 효율적으로 확립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초래 되는 비용은 막대할지 모른다. 이를 “민주적 능력 제약(democratic capacities constraint)”이라 부른다. 둘째, 현재의 자본주의경제체제와 사회경제적 환경 자체가 노동자 소유 기업보다는 자본주의적 기업에 더 유리하다. 이를 “경제적 환경 제약(economic environment constraint)”이라 일컫는다. 셋째, 노동자 겸 자본가로서 노동자 소유 기업의 노동자들은 자산을 자신들이 속한 기업에 투자하도록 요구받는다. 투자 자산과 임금 모두가 그들이 속한 한 기업의 성과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은 곧 그들이 높은 위험을 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결여는 잠재적 노동자들이 노동자 소유 기업에서 일하고자 선택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 이를 “자산 불평등 제약(wealth inequality constraint)”이라 한다.

이뿐만 아니라, Kwak(2013)은 노동자 소유 기업 내 노동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앞서 언급된 노동자 소유 기업의 장점들은 감소하는 반면 노동 탐색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기업에 비해 노동자 소유 기업이 규모 면에서 영세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콰주원은 자본 집약도가 더 낮을수록, 노동자들이 더 동질적일수록, 이직률이 더 낮을수록, 노동자 소유 기업에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을 보여 주었다.

Bowles and Gintis(1993)와 Kwak(2013)은 현재의 자본주의경제체제 하에서 자본주의적 기업에 비한 노동자 소유 기업의 규모 면에서의 영세성에 관한 설득력 있는 사회과학적 설명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노동자 소유 기업에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현재의 기제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살피지는 않았다. 다음 절에서 필자는 이 주제를 다룰 것이다.

3. 기본소득은 어떻게 노동자 소유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첫째, 개인 단위로 보자면,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은 경제주체로 하여금 자신에게 맞는,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경제)활동들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좀 더 많은 잠재적인 사람들을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 운영 구조를 갖는 기업 형태를 상대적으로 선호하게끔 하며, 이러한 기업 형태에서 일함으로써 수반되는 위험의 크기를 낮춤으로써 사람들의 노동자 소유 기업의 신규 진입을 늘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 소유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자산 불평등 제약”이 상당히 경감되지 모른다. 게다가 노동자 소유 기업에 더 잘 어울리고 더 적합한 더 많은 잠재적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진입함에 따라, 상호 모니터링 비용, 노동 탐색 비용, 이직률은 감소될 수 있으며 노동자의 동질성은 증가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민주적 능력 제약”을 상당히 감소시킬지 모른다.

둘째, 자금 조달 면에서 보자면, 비록 기본소득은 저당 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 10),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은 어떤 노동자 소유 기업에 속한 사람들의 규모 있는 자금 풀링(pooling)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은행 대출 등 외부 자금 조달 면에서

도 (현재 자본주의 기업에 비한 외부 자금 조달 면에서의 불리한 지점들은 일정 정도 존속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자금 공급의 원활함을 도모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제들은 자본 집약도가 비교적 높은 산업부문 내에서도 노동자 소유 기업이 자본주의적 기업과 더 잘 경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현재의 “경제적 환경 제약”은 상당히 줄어들지 못한다.

셋째, 기업 단위에서 보자면, 노동자 소유 기업은 단기적인 1인당 임금 또는 소득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들로 인하여 혁신 면에서(신규 고용, 위험을 감수하는 신규 투자 등을 포함하여) 불리하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형태의 공급곡선(negatively sloped supply curve)”으로 불리는 비합리적인 가격 및 양 조정 기제의 문제를 노정하였다(Ward, 1958; Domar, 1966; 김창근, 2016: 40, 269~270). 기본소득의 도입은 노동자 소유 기업 소속 개별 노동자의 소득 극대화 목적 함수에 사회 전체의 경제 상황을 중요 구성 요소로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게다가 개별 기업과 노동자의 이익 극대화 전략이 해당 사회 전체의 경제와 긴밀히 연결되게끔 함으로써 노동자 소유 기업의 전략에 혁신과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또한 거시경제적인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기본소득은 노동자 소유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전의 역사적 시도들과는 다른 해법일 것이다. 유고슬라비아, 칠레, 볼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지의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역사적으로 노동자 소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계획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유고슬로비아의 노동자 자주관리 경험은 전 사

회에 걸친 자주관리 제도의 도입이 대량 실업, 특권 집단의 출현, 노동자 자주관리 제도 내 경제주체들의 변화와 참여의 부족, 개별 기업과 노동자의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들, 그리고 자본의 집적과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기업 간, 노동자 간, 노동자와 실업자 간 격차의 증가를 초래했음을 보여 주었다(Sirc, 1979: 44; Flakierski, 1989: 44, 50, 80; 강정구, 1990: 114; 조원희, 1992: 184~186; 김창근, 2006: 258~259, 263~264; 김창근, 2016: 40~43; Marković, 2011: 122). 이와 유사하게도,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노동자 협동조합의 육성을 추구했던 우고 차베스 집권 하에서의 베네수엘라의 시도들 역시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들, 특권 관료층의 발흥, 자본주의적 기업과의 동형화isomorphism 현상을 낳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변화 및 참여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 주로 기인했다(Fuentes, 2011: 25, 32, 34~36; 김창근, 2016: 46~48, 50~51, 53~55, 62~63, 67). 우고슬라비아와 베네수엘라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노동자 소유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교훈과 국가 주도의 전 사회적인 노동자 소유 기업의 활성화 방안과는 다른 전략이 요청된다는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노동자 소유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정책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4. 결론: 경제민주주의를 향한 두 트랙 전략

기본소득에 대한 맑스주의적 비판 중 하나는 바로 그것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노동의 해방’에는 기여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기본소득이 노

동자 소유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제들을 간과하고 있다. 첫째, 노동자 겸 자본가로서의 위험은 정기적인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경감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자 소유 기업에 참가하는 잠재적 사람들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둘째, 신규 기업의 창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 규모를 충족시키기 더 쉬워지고, 자본 집약도를 증가시키고 재무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기업에 비한 노동자 소유 기업의 희소성과 규모 면에서의 영세성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동출자와 협조 용자를 촉진함으로써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정기적인 기본소득의 결과로, 노동자 소유 기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진가를 알아보는 유망한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고 동시에 노동자 소유 기업과 잠재적 참가자들 사이의 더 나은 매칭을 통해 노동 탐색 비용의 급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노동자 소유 기업 내 노동자들의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기제들은 자본주의적 기업에 비한 노동자 소유 기업의 비교우위(생산성, 민주적 의사 결정과 참여 등)를 향상시킴으로써 노동자 소유 기업의 확산과 지속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새로운 노동자 소유 기업의 창업, 기존 자본주의적 기업의 노동자 소유 기업으로의 전환, 기존 노동자 소유 기업의 발전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면, 기본소득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뿐만 아니라 ‘노동의 해방’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다.

맑스가 자본주의적 착취와 잉여가치 생산의 “은밀한 장소”로 본 작업장에 이르기까지 (경제)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자 한 노동자 소유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획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

나 노동자 소유 기업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거나, 현실에서 발견되는 일부 지표와 성장 추세에 고무되어 노동자 소유 기업을 일자리의 양과 질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까지 격상시켜서 자리매김해서는 곤란하다(예를 들어,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18을 보라). 우리에게 진정 긴요한 것은 기업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를 심화, 발전시키고자 하는 본연의 의도와 기획으로서 노동자 소유 기업을 올바르게 위치 짓는 것, 그리고 다양한 고유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소유 기업에는 자본주의경제시스템 하에서 수, 규모, 범위 면에서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만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사회과학적 기제가 있음을 식별하고 인정하는 것, 또한 더 나아가 그러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유망한 잠재적인 기제와 구조를 현실에서 발현시켜 나가는 것일 테다. 노동자 소유 기업은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한 충분조건도 필요조건도 아닌 반면, 기본소득은 비록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노동자 소유 기업의 활성화와 확산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기본소득은 개인 및 기업 수준에서 자본주의적 기업에 비해 노동자 소유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난점들과 장해 요소들을 감소시킴으로써 노동자 소유 기업을 간접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민주주의(기업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를 포함하여)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적인 방안은 바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바탕으로 한 노동자 소유 기업의 활성화, 즉 '경제민주주의를 향한 투 트랙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기본소득은 생산, 노동, 작업장 영역 안팎 모두에서 경제민주주의의 번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것은 노동력의 진정한 탈상품화를 촉진시

키고(Wright, 2005: 202; Standing, 2011), 임금, 노동조건 등의 면에서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강화시키며(Wright, 2005: 201~202), 생산 중심성 및 편향, 유급노동 중심성 및 편향, 강고한 노동 윤리와 가족 윤리로 특징되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생산과 재생산 영역을 아우르면서 경제민주주의를 이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기본소득은 노동자 소유 기업의 활성화와 번성을 통하여 기업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의 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정구 (1990), 「[특집: 사회주의 개혁의 이론과 현실] 벼랑에 선 페레스트로이카: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관리제」, 『경제와사회』 5, 107~130쪽.

김창근 (2006),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 자주관리에 대한 이론들」, 『진보평론』 제30호, 256~281쪽.

_____ (2016), 「베네수엘라 노동자 통제와 공동체 운동의 성과와 과제: 유고슬라비아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7(1), 37~72쪽.

이건민 (2017),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효과”. 『녹색전환연구소 전환소식』 2017년 5월호. [게시일: 5월 8일] http://igt.or.kr/index.php?mid=column&page=2&document_srl=56704.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18),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날짜: 2018년 7월 12~13일, 장소: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서울NPO지원센터, 대구 엑스코 국제회의실(사회적경제주간 행사장)]

조원희 (1992), 「시장사회주의의 체제동학에 관한 일고찰」, 『현상과인식』 15(4), 173~189쪽.

Bowles, Samuel and Herbert Gintis (1993), “A Political and Economic Case for the Democratic Enterprise”, *Economics and Philosophy* 9, pp. 75~100.

Casassas, David (2016), “Economic Sovereignty as the Democratization of Work: The Role of Basic Income”, *Basic Income Studies* 11(1), pp. 1~15.

Casassas, David and Jurgen De Wispelaere (2016), “Republicanism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Democracy”,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19(2), pp.283~300.

Domar, Evsey (1966), “The Soviet Collective Farm as a Producer Cooperative”, *American Economic Review* 56(4), pp. 734~757.

Flakierski, Henryk (1989), *The Economic System & Income Distribution in Yugoslavia*, M. E. Sharpe, Incorporated.

Fraser, Nancy (1994), “After the Family Wage: Gender Equity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al Theory* 22(4), pp. 591~618.

Fuentes, Federico (2011), *Cogestión es Revolución: Worker participation during the first Chávez administration (1999–2006)*.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an Arts Degree, School of Soci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Faculty of Arts and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Kwak, Juwon (2013), “Labor Search Cost and Labor Magnaged Firms”, Kor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41, pp. 47~68.

Marković, Goran (2011), “Workers’ Councils in Yugoslavia: Successes and Failures”, Socialism and Democracy 25(3), pp. 107~129.

Raventós, Daniel (2007), Basic Income: The Material Conditions of Freedom. Translated from the Spanish by Julie Wark. London and Ann Arbor: Pluto Press.

Sirc, Ljubo (1979), The Yugoslav Economy under Self-Management, The Macmillan Press Incorporated.

Standing, Guy (2017), Basic Income: And How We Can Make It Happen, Penguin.

Standing, Guy (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Bloomsbury Academic.

Van Parijs, Philippe (1995), Real Freedom for All: What (If Anything) Can Justify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Van Parijs, Philippe and Yannick Vanderborght (2017),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Ward, Benjamin (1958), “The Firm in Illyria: Market Syndicalism”, American Economic Review 48(4), pp. 566~589.

Wright, Erik Olin (2005), “Basic Income as a Socialist Project”, Rutgers Journal of Law & Urban Policy 2(1), pp. 196~203.

Zelleke, Almaz (2008), “Institutionalizing the Universal Caretaker Through a Basic Income?”, Basic Income Studies 3(3), pp. 1~9.

——— (2011), “Feminist Political Theory and the Argument for an Unconditional Basic Income”, *Policy and Politics* 39(1), pp. 27~42. 114